

결 재	담당 최	담당 이	담당 김	사무장 김	변호사 L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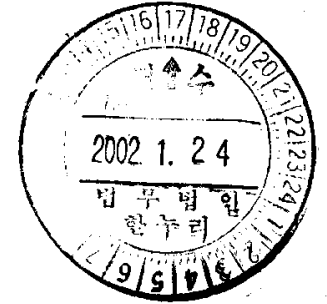
상대기간 2/7

2002. 1. 17. 판결선고	인
2002. 1. 17. 원본영수	

서울지방법원

제 1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1나2056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전동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이상훈, 김태선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대표자 주지 종고 (속명 : 윤용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변 론 종 결 2001. 12. 13.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2. 2. 선고 2000가소427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안진걸, 이정곤의 각 증언 및 당심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그 등록을 마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이다.

나. 피고는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일대의 토지 11,588,356㎡ 및 그 중 위 방광리 70 지상에 위치한 '천은사 본사'를 비롯하여 같은 리 71 지상의 '천은사 방장선원', 같은 리 13 지상의 '삼일암', 같은 리 69, 69-2 지상의 '도계암', 같은 리 산 1-30 내지 1-32 지상의 '수도암', '상선암' 등의 부속 건조물들을 소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건조물들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피고 사찰의 경내지(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소정 요건을 구비한 토지)이

다.

다. 피고 소유의 건조물들이 소재하고 있는 위 방광리 일대는 '지리산 국립공원'(이하 국립공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편 국립공원구역을 횡단하여 전남 구례읍과 남원시 산내면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인 861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피고 사찰의 경내지를 관통하고 있는 바, 구례읍 방면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피고 사찰의 일주문을 통과하여 피고 사찰의 경내지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동하면 '시암재', '성삼재', '궁궐터', '반선' 등을 거쳐 산내면 내령리 방면으로 국립공원 구역을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로의 양 옆으로 천은사 본사,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 등 피고 소유의 건조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라. 소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로를 따라 피고 사찰의 일주문을 통과하여 피고 사찰의 경내지로 진입한 지점에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매표소'(이하 이 사건 매표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공단과 피고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표소에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국립공원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1인당 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과 피고 소유의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표소를 통하여 입장하는 사람들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계 금 2,000원을 납부하여야만 이 사건 매표소를 통과할 수 있다.

마. 원고는 2000. 4. 30.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위 방광리 방면에서 위 산내면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건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계 2,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노선인정한 도로로서 원고의 이동구간인 전남 구례읍과 남원시 산내면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도로이기는 하나 주로 국립공원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산악도로인 관계로 위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우회도로와 비교하여 위 구간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표소를 통하여 국립공원에 입장한 것이지 국립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관람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가 관리공단과의 상호협약에 따라 원고가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2,000원 중 문화재 관람료에 해당하는 금 1,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문화재를 공개하는 대가로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료 징수방법의 선택에 관한 일정 범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택한 관람료 징

수방법이 위와 같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당해 문화재의 특성 및 문화재 보호법 내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 별지 목록 제4 기재 문화재 “천은사”는 문화재자료로서 그 수량이 “일원(一圓)”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문화재자료 천은사에는 천은사 본사만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인 ‘천은사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 등의 산내 암자들은 물론 위 사찰이나 암자들의 존엄과 풍치 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변의 일정 범위의 토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특히 문화재자료 천은사의 특성상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행위를 일정한 공간 내에서 관람이 이루어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의 관람행위와 동일시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수종의 문화재별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일일이 문화재 관람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은 문화재의 주위 경관을 훼손하고 관람자들이 문화재 관람을 통하여 얻는 편익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이나 유지·관리비용의 조달을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 지속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표소는 피고 사찰의 일주문 안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천은사 본사의 경관이 보이게 되므로 이 사건 대표소를 통과하는 입장객들은 누구나 인근에 피고 사찰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과 일주문을 통과함으로써 피고 사찰의 경내지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대표소를 통하여 입장한 사람들은 문화재자료 천은사를 포함하여 피고 소유의 문화재 전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납부하고 입장한 사람들은 실제로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관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도로는 일반적인 도로와는 달리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바, 원고는 원고가 이동하고자 하는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피고 사찰의 경내지에 진입하였고 그 이동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의 양옆에 소재한 천은사 본사,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 등 피고 소유의 문화재들을 자연스럽게 감상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문화재보호법상 소정의 '관람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5) 이와 같이 피고가 그 소유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 사찰의 일주문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매표소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입장객들을 관람자로 취급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부여된 관람료 징수 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일탈하지 않음은 물론 문화재보호법 내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원고는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관람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를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법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관리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였다고 하여 그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법적 근거

그러므로 먼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하는 한편 문화재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자료를 '지정문화재'로 정의하고 있는바(제2조), '지정문화재'는 지정권자가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3조, 제39조, 제58조 제2항).

따라서 피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정문화재들을 공개하는 대가로 관람자로부터 피고가 자체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 것이라면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통합징수의 문제

나아가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의 통합징수 문제에 관하여 살펴건대, 문화재 관람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26조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입장객'으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근거 법령, 징수주체, 징수대상 등이 상이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과 문화재 관람의 기회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각 징수주체가 개별적으로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협의하여 통합하여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징수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그와 같은 통합징수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 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 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는 등의 공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위와 같은 통합징수가 이른바 “끼워팔기”로서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징수 사실 자체가 부당이득의 성립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관람료 징수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문화재의 소유자로서 그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관람료 징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문화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람료 징수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의 문화재들 중에는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1폭, ‘천은사 나옹화상원불’ 1구와 같은 동산이나 ‘천은사 극락보전’ 1동과 같은 특정 건조물과 같이 일반 공중의 출입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문화재 외에 ‘천은사’ 일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여기서 ‘일원’이라 함은 ‘천은사 본사’ 외에 그 구성부분인 ‘천은사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 등 피고 사찰의 경내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련의 부속 건조물들을 포괄하여 이를 일체로 파악하는 수량 단위로 볼 수 있고, 아울러 위 방광리 일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려한 풍경과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피고 소유의 문화재가 어우러져 그 입장객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 심신의 단련, 문화체험의 기회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피고 사찰의 경내지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수종의 문화재에 대하여 일일이 일반 공중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피고 사찰의 일주분을 통과한 지점에 소재한 이 사건 대표소에서 피고 소유 문화재 전체에 대한 관람료를 일괄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 관람자성 유무 및 부당이득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의 통합징수 문제가 부당이득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아니하고 관람료 징수방법의 선택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9조, 제58조 제2항) 피고가 원고로부터 관람료로 징수한 금액의 보유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원고를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의 대상인 '관람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관람자'라고 함은 일응 '주관적으로는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문화재 관람행위를 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획일적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소유자인 피고가 선택한 방법, 즉 개별 문화재 별로 일일이 일반 공중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 문화재 전체에 대한 관람료를 일괄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관람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관람료 납부 후에 실제로 관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그러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재가 공개되고 있는 장소에 임하여 그 문

문화재에 대한 물리적·장소적 접근 기회의 부여를 요구하는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과연 이 사건의 원고를 위와 같은 의미의 '관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0. 4. 30.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위 방광리 방면에서 위 산내면 방면으로 이동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합징수되는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일 뿐 그 관람료 납부행위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을 요구하는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표소에 임하여 바로 인근에 피고 사찰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 사찰의 일주문을 통과함으로써 피고 사찰의 경내지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문화재들 중 일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공물(公物)인 이 사건 도로의 이용과정에 수반된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관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제도의 취지가 유지·관리비용의 조달을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 지속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 문화재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일일이 관람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관람의사가 인정되는 사람들로부터

만 관람료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문화재 보호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문화재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확실적 방법으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을 관람자로 취급하여 그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피고가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방법은 피고에게 부여된 관람료 징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단순히 도로이용자로만 보아야 할 사람들과 문화재 관람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의 강구가 불가능하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예를 들면, 관람지역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일단 일괄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다음 소정의 시간 내에 관람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관람료를 환불하여 주는 방법 등을 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단순한 도로이용자를 문화재 관람자와 구별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의 선택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 사건 도로가 피고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도로이용자를 예외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한 것이지 단순히 피고 사찰의 경내지에 입장하는 대가나 이 사건 도로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 사건 도로 외에도 원고가 이동한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고 이 사건 도로가 지리산 관광이나 피고 소유의 문화재 관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유료도로법 제4조에 의하면, 부근에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이 불가피하지 아니한 경우나 당해 도로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도로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그 도로통행자에 대하여 문화재 관람료의 납부를 강제할 근거는 없는 점, 끝으로 이 사건 도로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관통하는 관계로 피고 사찰 소속 승려들의 수행환경이 악화되고 피고가 그 소유의 문화재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지장을 받는 등 피고가 피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문제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인 전라남도 사이에서 해결되거나 문화재보호의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자를 '관람자'로 의제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인 점{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존, 수리 등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나 경비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8조, 제31조, 제56조 등), 자연공원법은 공원 입장료 등의 수입은 공원의 관리 외에도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문화재 관람에 대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의 대상자인 '관람자'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를 '관람자'로 취급하여 원고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피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한 위 금 1,000원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1,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청

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7. 7. 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17.

재판장 판사 석호철 _____

 판사 유성훈 _____

 판사 권재창 _____